
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678호 2020. 7. 30.(목)

고 시

- 사천시 고시 제263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사항 고시 ----- 1
- 사천시 고시 제264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사항 고시 ----- 2

입법예고

- 사천시 공고 제946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— 3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사 천 시 공 보

제678호

사천시 고시 제2020-263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0. 7. 30.

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승인번호 : 제2020 - 10호
2. 점용·사용 승인 연월일 : 2020년 07월 22일
3. 점용·사용의 목적
 - 하봉항 부잔교 설치공사
4. 점용·사용의 장소
 -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5-181번지선 공유수면
5. 점용·사용의 면적 : 246㎡(직접 : 87, 간접 : 159)
6. 점용·사용의 기간 : 2020년 7월 22일 ~ 2035년 7월 21일
7.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·주소
 - 가. 성 명 : 사천시장(해양수산과장)
 - 나.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
사 천 시 공 보

제678호

사천시 고시 제2020-264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0. 07. 30.

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승인번호 : 제2020 - 11호
2. 점용·사용 승인 연월일 : 2020년 07월 22일
3. 점용·사용의 목적
 - 하부포항 부잔교 설치공사
4. 점용·사용의 장소
 - 사천시 늑도동 195-6번지선 공유수면
5. 점용·사용의 면적 : 310㎡(직접 : 109, 간접 : 201)
6. 점용·사용의 기간 : 2020년 7월 22일 ~ 2035년 7월 21일
7.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·주소
 - 가. 성 명 : 사천시장(해양수산과장)
 - 나.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
사 천 시 공 보

제678호

사천시 공고 제2020-946호

「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7월 30일

사 천 시 장

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인구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내용을 확대하고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임신부·다자녀 가족 할인업소 지원 신설(안 제3조제7호)
- 나. 출산장려시책 지원내용의 확대 및 관련 자치법규의 개정사항 반영(안 별표 1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(참조: 혁신법무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

사 천 시 공 보

제678호

나, 사천시청 홈페이지(www.sacheon.go.kr의 민원/공개>행정정보공개>법무행정 종합정보>입법예고란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4. 보내실 곳: 사천시장(참조: 혁신법무담당관)

(우편번호: 52539, 주소: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, 전화: 831-2195, FAX: 831-6015)

사 천 시 공 보

제678호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: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생 년 월 일:

○ 전 화 번 호:

조례안 내용	의 건	비 고

사 천 시 공 보

제678호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임산부·다자녀 가족 할인업소 지원: 임산부·다자녀 가족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시와 협약을 맺은 업체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출산축하용품 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1호 관련 별표 1의 출산축하용품 중 아기 탄생 축하메시지 게시자 지원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한 영아부터 적용한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678호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지원대상) 인구증가시책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. 단,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금액이나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.</p> <p>1. ~ 6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3조(지원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7. 임산부·다자녀 가족 할인업소 지원: 임산부·다자녀 가족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기로 시와 협약을 맺은 업소</u></p>

사 천 시 공 보

제 678 호

<현 행>

[별표 1] <개정 2019.12.31., 2020.6.30.>

출산장려시책 지원 (제4조제1호 관련)

지원내용	상세내역
임신축하용품	○ 시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임신부 등록된 자를 대상 임신축하용품 지급
출산지원금	○ 첫째 아 : 100만원 - 신청서에 따라 1회에 전액 지급 ○ 둘째 아 : 200만원 - 신청서에 따라 1회에 전액 지급 ○ 셋째 아 이상 : 600만원 - 출산 후 신청서 제출 시 : 200만원 - 출산일 기준으로 1년(12개월) 되었을 때 : 100만원 - 출산일 기준으로 2년(24개월) 되었을 때 : 100만원 - 출산일 기준으로 3년(36개월) 되었을 때 : 100만원 - 출산일 기준으로 4년(48개월) 되었을 때 : 100만원
출산축하용품	○ 시 관내 출생신고자 대상 출산축하용품 지급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	○ 「사천시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」 제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
모유수유 클리닉	○ 모유수유 유촉기 대여 : 대여기간 2개월
출생아 복지보험료	○ 시와 협약한 업체에 가입되며, 5년간 보험료(3만원 이내)를 지원
임산부, 신생아 및 영유아 지원 등	○ 시의 출산장려 시책 및 계획에 따라 지원
우대인증	○ 공공시설이용료 감면(유효기간 5년, 분실·훼손시 재발급 가능) - 실내수영장 이용료 : 일반인 이용자의 수영장 개인 이용료 또는 월 이용료 기준 50퍼센트 할인 -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: 사천시 주관 기획공연에 한하여 정액입장료 또는 30퍼센트 할인 -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: 50퍼센트 할인 - 항공우주박물관 관람료 : 무료 -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 : 무료
쓰레기봉투 지원	○ 둘째 이상의 출생아 한 명당 400리터 지원 단, 다태아인 경우 첫째 출생아에게도 400리터 지원
수도요금 감면	○ 「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」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

사 천 시 공 보

제 678 호

<개정안>

[별표 1] <개정 2019.12.31., 2020.6.30.>

출산장려시책 지원 (제4조제1호 관련)

지원내용	상세내역
임신축하용품	○ 시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임신부 등록한 자를 대상 임신축하용품 지급
출산지원금	○ 첫째 아: 100만원 - 신청서에 따라 1회에 전액 지급 ○ 둘째 아: 200만원 - 신청서에 따라 1회에 전액 지급 ○ 셋째 아 이상: 600만원 - 출산 후 신청서 제출 시: 200만원 - 출산일 기준으로 1년(12개월) 되었을 때: 100만원 - 출산일 기준으로 2년(24개월) 되었을 때: 100만원 - 출산일 기준으로 3년(36개월) 되었을 때: 100만원 - 출산일 기준으로 4년(48개월) 되었을 때: 100만원
출산축하용품	○ 시 관내 출생신고자 대상 출산축하용품 지급 ○ <u>아기 탄생 축하메시지 게시자를 대상으로 출산축하용품(상품권을 포함한다) 지급</u>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	○ 「사천시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」 제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
모유수유 클리닉	○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: 대여기간 2개월
출생아 복지보험료	○ 시와 협약한 업체에 가입되며, 5년간 보험료(3만원 이내)를 지원
임산부, 신생아 및 영유아 지원 등	○ 시의 출산장려 시책 및 계획에 따라 지원
<u>임산부·다자녀 가족 할인업소 지원</u>	○ <u>시와 협약한 업소를 대상으로 연 1회 3만원 미만의 물품(상품권을 포함한다) 지원</u>
우대인증	○ 공공시설이용료 감면(유효기간 5년, 분실·훼손시 재발급 가능) - 실내수영장 이용료: 일반인 이용자의 수영장 개인 이용료 또는 월 이용료 기준 50퍼센트 할인 - 문화예술회관 관람료: 사천시 주관 기획공연에 한하여 정액입장료 또는 30퍼센트 할인 - 삼천포유람선 승선료: 50퍼센트 할인 - 항공우주박물관 관람료: 무료 -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: 무료
쓰레기봉투 지원	○ 둘째 이상의 출생아 한 명당 400리터 지원 단, 다태아인 경우 첫째 출생아에게도 400리터 지원
수도요금 감면	○ 「 <u>사천시 수도 급수조례</u> 」 제3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수도 요금 감면

사 천 시 공 보

제678호

관 련 법 규

□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(생 략)